

Extension of COVID-19 incentives ^{P1}

Update on tax facilities related to COVID-19 ^{P2}

Update on customs incentive for goods related to handling COVID-19 pandemic ^{P3}

COVID-19 관련 조세혜택의 연장

재무부는 2020년 7월 1일자로 PMK-82¹를 발표하여 기존 재무부 규정 PMK-9²에서 제공하던 COVID-19 관련 조세혜택을 연장하였습니다. 기존 규정은 [TaxFlash No. 04/2021](#)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기존 규정에서 제공하던 아래의 조세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:

1. 적절한 납세의무자의 근로자가 정규소득이 IDR 200 million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, Article 2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는 정부가 부담합니다.
2. Article 22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적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면제됩니다.
3. 적절한 납세의무자는 Article 25 월선납법인세에 대하여 50%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.
4. 정부령 No.23 Year 2018(GR-23)에 따라 0.5%의 최종분리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분도 정부가 부담합니다.
5. 관개 용수 활용(*Program Percepatan Peningkatan Tata Guna Air Irigasi/P3-TGAI*)을 개선하기 위한 가속화 프로그램하에서 납세자가 건설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최종분리과세를 정부가 부담합니다.
6. 적절한 납세의무자는 최대 IDR 5 billion 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조세혜택 기간의 연장

조세혜택의 기한이 기존 2021년 7월까지에서 PMK-82 에 따라 **2021년 12월까지로 연장이 되며, 동 혜택의 연장을 위하여는 반드시 통지(Notification) 또는 신청(Application)을 하여야 합니다.**

¹ MoF Regulation No.82/PMK.03/2021 (PMK-82) dated and effective on 1 July 2021

² MoF Regulation No.9/PMK.03/2021 (PMK-9) dated and effective on 1 February 2021

조세혜택의 연장 적용을 위한 통지 또는 신청

납세자가 기존 규정인 PMK-9 에 따라 조세혜택을 통지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Article 21, 22 및 25 의 조세감면혜택의 연장을 위하여는 PMK-82 에 따라 통지 또는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.

납세자가 2021 년 7 월부터 Article 21 및 Article 25 의 조세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**통보 또는 신청을 반드시 2021 년 8 월 15 일까지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실행보고서(Realisation report)

PMK-82 는 Article 21 및 최종분리과세에 대한 조세혜택에 대하여 실행보고서(수정포함)를 제출한 납세자에 대하여, 2020 년 1 월-6 월 기간에 대하여 2021 년 10 월 31 일까지 실행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적격한 납세자 리스트

PMK-82 에 따른 적격한 납세자는 각 조세혜택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확대/축소 되었습니다:

- a. Article 21 개인소득세 혜택 - 기존 1,189 KLU 를 유지(추가없음) – Attachment A 참고.
- b. Article 22 수입원천징수세 혜택 – 기존 790 개 KLU 에서 **132 개 KLU** 로 변경됨. 특정 운송산업은 신규로 추가되었으며, 광업, 식품산업, 섬유산업, 엔터테인먼트, 리크리에이션 서비스, 조림, 해상 산업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(Attachment J 참고).
- c. Article 25 월별 선납소득세 혜택 – 기존 1,013 개 KLU 에서 **216 개 KLU** 로 변경됨. 강 또는 호수관련 운송산업, 해상운송 등이 추가되었으며, 농업, 대규모 트레이딩, 회계서비스 등은 삭제되었습니다(Attachment O 참고).
- d. VAT 혜택 – 기존 716 개 KLU 에서 132 개 KLU 로 변경됨. 강 또는 호수관련 운송산업, 해상운송 등이 추가되었으며, 담배산업, 시멘트산업, 가구산업 등이 삭제되었습니다(Attachment R 참고).

납세자는 반드시 각 조세혜택의 적용가능성을 PMK-9 의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. PMK-82 의 전문([PMK-82](#)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Covid-19 관련 조세혜택 업데이트

재무부는 의료분야의 세제 혜택에 대한 기존규정 GR-29³의 연장을 위하여 재무부 규정 PMK-83⁴을 발표하였습니다.

PMK-83 에서 규정하는 조세혜택은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:

1. 의료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: 부가세(VAT), 소득세 제21 조, 제22조 및 제23조;
2. GR-29에 따른 세제 혜택: COVID-19 관련 제품 생산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감면, 기부금 공제, 정부로부터 의료 종사자가 받는 추가 소득에 대한 Article 21의 0%세율 적용 및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임대 소득에 대한 최종 소득세율 0%.

자세한 과세규정에 대한 설명은 TaxFlashes⁵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PMK-83 의 주요 변경사항은 상기 2 번의 조세혜택 기간을 기존 2021 년 6 월까지에서 2021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며, 반면에 상기 1 번의 혜택기간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로 동일합니다.

Covid-19 팬더믹 관련 재화에 대한 관세 혜택 업데이트

또한, 재무부는 Covid-19 팬더믹의 대응과 관련한 재화에 대하여 관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PMK-92⁶를 발표하였습니다. 동 규정의 PMK-34⁷의 세 번째 개정규정에 해당하며, 관세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재화의 리스트를 개정하였습니다. 특정 약품(e.g. oseltamivir), 산소, 산소발생장비, 호흡기 치료 장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기존 TaxFlashes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(*)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(KBD)로 연락부탁드립니다:

정태훈 회계사
(Email : taehun.jung@pwc.com)

박인혁 회계사
(Email : inhyuk.park@pwc.com)

³ Government Regulation No.29 Year 2020 (GR-29) dated and effective from 10 June 2020

⁴ MoF Regulation No.83/PMK.03/2021 (PMK-83) dated and effective from 1 July 2021

⁵ [TaxFlash No.40/2020](#), [TaxFlash No.25/2020](#), and [TaxFlash No.02/2021](#)

⁶ MoF Regulation No.92/PMK.04/2021 (PMK-92) dated and effective from 12 July 2021

⁷ MoF Regulation No.34/PMK.04/2020 (PMK-34) dated and effective from 17 April 2020

⁸ [TaxFlash No.15/2020](#), [TaxFlash No.28/2020](#), and [TaxFlash No.42/2020](#)

Your PwC Indonesia Contacts:

Abdullah Azis
abdullah.azis@pwc.com

Gerardus Mahendra
gerardus.mahendra@pwc.com

Raemon Utama
raemon.utama@pwc.com

Adi Poernomo
adi.poernomo@pwc.com

Hasan Chandra
hasan.chandra@pwc.com

Runi Tusita
runi.tusita@pwc.com

Adi Pratikto
adi.pratikto@pwc.com

Hendra Lie
hendra.lie@pwc.com

Ryuji Sugawara
ryuji.sugawara@pwc.com

Alexander Lukito
alexander.lukito@pwc.com

Hisni Jesica
hisni.jesica@pwc.com

Soeryo Adjie
soeryo.adjie@pwc.com

Ali Widodo
ali.widodo@pwc.com

Hyang Augustiana
hyang.augustiana@pwc.com

Sujadi Lee
sujadi.lee@pwc.com

Amit Sharma
amit.xz.sharma@pwc.com

Kianwei Chong
kianwei.chong@pwc.com

Susetiyo Putranto
susetiyo.putranto@pwc.com

Andrias Hendrik
andrias.hendrik@pwc.com

Lukman Budiman
lukman.budiman@pwc.com

Sutrisno Ali
sutrisno.ali@pwc.com

Anton Manik
anton.a.manik@pwc.com

Mardianto
mardianto.mardianto@pwc.com

Suyanti Halim
suyanti.halim@pwc.com

Antonius Sanyojaya
antonius.sanyojaya@pwc.com

Margie Margaret
margie.margaret@pwc.com

Tim Watson
tim.robert.watson@pwc.com

Ay Tjhing Phan
ay.tjhing.phan@pwc.com

Oki Octabiyanto
oki.octabiyanto@pwc.com

Tjen She Siung
tjen.she.siung@pwc.com

Brian Arnold
brian.arnold@pwc.com

Omar Abdulkadir
omar.abdulkadir@pwc.com

Turino Suyatman
turino.suyatman@pwc.com

Dexter Pagayonan
dexter.pagayonan@pwc.com

Otto Sumaryoto
otto.sumaryoto@pwc.com

Yessy Anggraini
yessy.anggraini@pwc.com

Enna Budiman
enna.budiman@pwc.com

Parluhutan Simbolon
parluhutan.simbolon@pwc.com

Yuliana Kurniadjaja
yuliana.kurniadjaja@pwc.com

Gadis Nurhidayah
gadis.nurhidayah@pwc.com

Peter Hohtoulas
peter.hohtoulas@pwc.com

Yunita Wahadaniah
yunita.wahadaniah@pwc.com

www.pwc.com/id



PwC Indonesia

@PwC_Indonesia

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,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, or send an email to id_contactus@pwc.com.

DISCLAIMER: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.

© 2021 PT Prima Wahana Caraka. All rights reserved.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,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.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. Please see www.pwc.com/structure for further details.